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 신설〉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26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제2200226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통행료 감면 가능 차량의 종류에 특별교통수단을 포함 (안 제15조제2항)	2
※ 참고자료	
특별교통수단 통행료 지원 현황 및 이용대상	16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26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정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6. 7.
3. 회 부 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통행료 감면 대상에 특별교통수단을 포함(안 제15조제2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현행 제15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¹⁾ 및 제16조의2²⁾에 따라 운영되는 특수교통차량 및 특수교통차량 외의 차량을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시·도지사는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추가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의 현행 조문 (법률 제15357호)	현행 (법률 제19684호, 2024.2.17. 시행)	개 정 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u>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u>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 ----- -----.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의 현행 조문 (법률 제15357호)	현행 (법률 제19684호, 2024.2.17. 시행)	개 정 안
<신 설>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로법」 제7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	1. <u>군작전용 차량</u> 2. <u>구급 및 구호차량</u> 3. <u>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u> 4.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u> 5.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u>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의 현행 조문 (법률 제15357호)	현행 (법률 제19684호, 2024.2.17. 시행)	개 정 안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2024.2.17.에 시행된 현행법률(제19684호)은 「도로법」 제77조 제1항³⁾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⁴⁾ 또는 제4항⁵⁾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행료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개정안에는 해당 단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통행료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단서를 삭제하려는 취지보다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임.

3)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1) 특별교통수단의 개념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⁶⁾ 및 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휠체어 승강설비와 고정설비 등을 갖춘 차량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보행 중증장애인, 65세 이상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에 준하는 교통약자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람⁷⁾임.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령⁸⁾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증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삭제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므로, 전국적으로 약 4,000여 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음.

【 시도별 특별교통수단 대수 및 연간 이용실적 】

(단위 : 대, 천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법정 대수	4,587	583	318	214	255	128	134	90	22	1,034	191	179	236	234	246	315	340	68
운행 대수	4,268	664	187	180	193	116	96	80	21	1,181	175	136	181	207	184	225	374	68
도입률 (%)	93	113.9	58.8	84.1	75.7	90.6	71.6	88.9	95.5	114.2	91.6	76	76.7	88.5	74.8	71.4	110	100
이용 실적	8591	1348	299	400	281	509	176	169	40	2260	371	237	389	354	492	257	679	332

※ 자료: 국토교통부(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시·군이 택시를 임차하여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으로 운영하는 ‘임차택시’와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택시 이용 시 요금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바우처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임차택시 406대, 바우처택시 14,074대 등 총 14,480대가 운영되고 있음.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차택시 및 바우처 택시의 구별】

구분	임차택시 (휠체어 불가)	바우처택시 (휠체어 불가)
개념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으로 지자체가 임차·운영하는 택시	교통약자 등이 택시 이용 시 지자체가 이용요금 일부 지원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운영대수	406대(2022년 기준)	14,074대(2022년 기준)
요금	특별교통수단에 준하여 운영	일반택시와 동일 * 이용요금의 일부 보조

※ 자료: 국토교통부

【임차, 바우처 택시 운영현황】

(단위 : 대)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4,780	5,597	4,700	310	300	188	240	257	11	441	1,731	95	41	73	232	112	311	141
임차	406	57	-	-	-	88	90	-	-	73	15	23	-	47	12	1	-	-
바우처	14,074	5,382	4,700	310	300	100	150	241	0	333	1,716	54	33	-	220	93	301	141
기타	256	300							16	11	35		18				18	10

* 기타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등

※ 자료: 국토교통부(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2) 통행료 감면 제도

현행법 제15조제2항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9)에서는 통행료의 감면이 가능한

9)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 1의3.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 1의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2의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배기량이 1천cc 미만일 것
 - 나.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7.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8.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9.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 9의2.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이 경우 감면기간은 제6항에 따른

차량의 종류로 군작전용차량, 경찰작전용차량, 구급·구호·소방차량, 교통단속용차량, 유료도로건설·유지관리차량, 긴급물류수송차량, 긴급통행제한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환자, 경차 사용자, 친환경차, 출퇴근시간대 고속국도 사용 차량, 심야시간대 고속국도 통행 화물차, 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량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등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10)에서는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별 통행료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이하 “비상자동제동장치”라 한다) 장착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차량(같은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한 차량은 제외한다)일 것

나.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였을 것

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할 것

10. 삭제 <2019. 1. 15.>

10)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③ 제1항·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나.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차량

다.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감면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감면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통행료 감면 대상별 감면율 】

항 목			감면율	목 적
면제	군작전용차량, 경찰작전용차량, 구급·구호·소방차량, 교통단속용차량, 유료도로건설·유지관리차량, 긴급물류수송차량, 긴급통행제한차량		100%	긴급차량지원
	독립유공자			교통약자배려
	국가유공자	1~5급		
	5·18 부상자	1~5급		
감면	국가유공자	6~7급	50%	교통약자배려
	5·18 부상자	6~14급	50%	
	장애인		50%	
	고엽제 환자	후유증환자	50%	
		후유의증환자	50%	
	경차(1,000cc미만), 친환경차		50%	국가정책지원
	출퇴근(1-3종)		20%, 50%	
	화물차 심야할인(영업용)		30%, 50%	
	비상제동장치		30%	

라.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마. 제2항 각 호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2. 통행료의 100분의 50

가.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나.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다.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차량

라. 제1항제6호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마.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 1)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차량
- 2)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한다)를 통과하는 차량

바. 제1항제9호의 차량

3. 통행료의 100분의 30

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차량

나. 제1항제9호의2의 차량

4. 통행료의 100분의 20: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3) 개정안의 취지 및 검토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에 특별교통수단 등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유료도로에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임.

전국적으로 1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중인데,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하여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지원하여 주는 지자체는(대구, 광주, 목포, 봉화 등) 총 43개(27%)이며, 그 외에는 이용자가 유료도로 통행료를 부담(서울, 부산, 인천 등)하고 있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¹¹⁾.

이에 개정안과 같이 일괄적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지원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유공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이용대상이 상이하므로 특별교통수단의 통행료 감면 시 수혜 대상이 지자체에 따라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11) 참고자료 참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1/3~1/5 수준으로 이용자가 부담함.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이 아닌 일반택시 등 타인의 차량을 탑승하는 교통약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노인·임산부 등 장애인이 아닌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자신이 보유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통행료 감면 요구가 제기될 수 있음.

③ 동 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 논거로서 고속도로 연장¹²⁾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도로 유지관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 유지관리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도로안전 확보를 위해 감면제도의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장애인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전기·수소차 감면등 할인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고 도로공사의 통행요금 감면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면제도의 확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제18대국회 1건¹³⁾, 제19대국회 2건¹⁴⁾, 제20대국회 2건¹⁵⁾, 제21대국회 2건¹⁶⁾ 등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으나, 장애인이 탑승한 일반택시와의 형평성 문제,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상황, 특

12) 재정고속도로 연장(km) : (2021) 4,037 → (2022) 4,079 → (2023) 4,112

13) 홍정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12756호

14) 함진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6059호),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4827호)

15) 김경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284호), 함진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176호)

16) 홍기원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7호),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5호)

별교통수단에 장애인이 타지 않는 상황, 일부 지자체에서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제21대국회 주요 논의내용】

일 시	구 분	논 의 내 용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 소위(2021.3.1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4457)	-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특별교통수단을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가 장애인의 교통 수단에 대하여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 장애인의 탑승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비용을 다 부담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 소위(2023.6.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045)	- 동법 시행령의 경우, 통행료 감면 제도가 “차량”에 대한 감면인지, “대상”에 대한 감면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정비 필요함 -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을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지자체별 형평성이나 교통수단별 형평성, 교통약자별 형평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

4) 체계 · 자구 사항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2024. 2. 17.에 시행된 현행 법률(제19684호)은 「도로법」 제77조제1항17)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18) 또는 제4항19)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7)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제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통행료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가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어 있으나, 개정안의 제안 취지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5

참 고

특별교통수단 통행료 지원 현황 및 이용대상

- 전국 160개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 중이며 이 중 43개 지자체(27%)가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또는 동일 세대원) 소유 차량 이용시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 감면

< 주요 지자체 이용대상 및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주체 >

구분	이용대상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주체
	장애인	국가 유공자	보호자	교통 약자	고령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외국인 (휠체어 이용)	
서울	●		●	●					이용자
부산	●		●		●	●			이용자
대구	●	●	●		●				지자체 (고속도:이용자)
인천	●		●		●	●			이용자
광주	●		●		●			●	지자체 (고속도:이용자)
대전	●		●		●	●	●		이용자
울산	●		●	●	●				지자체
세종	●	●	●		●	●	●		이용자
경기 (안양)	●		●		●		●		안양, 평택 등(5/31) 지자체 부담
강원 (원주)	●		●		●	●			전 시·군(0/18) 이용자 부담
충북 (청주)	●	●	●	●	●				전 시·군(0/11) 이용자 부담
충남 (천안)	●		●			●	●		전 시·군구(0/14) 이용자 부담
전북 (전주)	●		●		●	●	●		전 시·군구(0/14) 이용자 부담
전남 (목포)	●		●		●	●	●		목포, 여수 등(16/22) 지자체 부담
경북 (포항)	●		●	●	●	●	●		봉화(1/23) 지자체 부담
경남 (창원)	●	●	●		●	●	●		전 시군구(18/18) 지자체 부담
제주	●		●		●	●	●		-

※ 자료: 국토교통부(2022년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 연구)